

「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허민근 의원

2. 찬 성 자 : 김민성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교육·상담·생활편의·의료 등 실질적 정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정의(안 제2조)
-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지원단체 보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의2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교육·상담·생활편의·의료 등 실질적 정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 인식 개선, 교류 사업,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에서 도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,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에도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적 정합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됨. 아울러, 안정적인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경북도로부터 협의회 관련 사항을 조속히 위임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, 구미시의 규칙 제정을 통한 지역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